

수원대학교 창업지원단 운영규정

□ 제정 : 2017. 1. 1.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학생, 교직원, 연구원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지원, 창업사업화 및 투자지원 사업(이하 “창업지원사업”이라 한다.)의 통합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수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.) 창업지원단(이하“창업지원단”이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조(사업)

창업지원단은 이 규정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및 운영
2. 창업지원기구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.) 구축 및 운영지원
3. 창업지원사업의 현황 및 성과 관리
4. 그 밖에 창업지원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2장 조직 및 운영

제3조(조직)

창업지원단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단장
2. 부단장

3. 운영위원회
4. 창업멘토교수단
5. 운영지원팀
6. 창업지원기구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.)

제4조(단장)

- ① 창업지원단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창업지원단에 단장을 둔다.
- ② 단장은 본교 교무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부단장)

- ① 창업지원단에는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사무전반을 관장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둔다.
- ② 부단장은 창업 또는 기업경영 경험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창업멘토교수단)

창업멘토교수는 본교 교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7조(운영지원팀)

- ① 창업지원단의 제반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팀을 둔다.
- ② 행정팀에는 행정팀장과 직원을 두며, 행정팀장은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8조(센터)

창업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를 두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통해 정한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9조(운영위원회)

창업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0조(구성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창업지원단장과 부단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.
- ③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창업지원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되, 센터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- ④ 위원회의 간사는 행정팀장이 한다.

제11조(임기)

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2조(회의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장은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- ④ 위원장은 회의과정에서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3조(심의사항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창업지원단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2.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4. 사업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창업지원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

제14조(소위원회)

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업지원단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15조(회의록)

위원회는 매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, 위원장은 결의 사항에 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장 재 정

제16조(재원)

창업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지원기관의 출연금 및 지원금
2. 본교의 지원금
3. 센터운영 수입금
4. 창업지원사업에 관하여 기업 및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지원금
5. 창업지원사업의 성과에 따른 수익금 및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 등
6. 기타 수입금

제17조(회계기준)

① 창업지원단의 회계는 본교 예산회계규정 및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는 창업지원단 회계규정에 의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에 관한 사항 등 창업지원단 회계와 관련하여 제16조

제1호 소정의 재정지원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회계처리관련 규정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

제18조(예,결산 및 사업)

창업지원단장은 창업지원단의 예산과 사업계획서, 결산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.

제 5 장 기 타

제19조(세부사항)

창업지원단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 6 장 부 칙

이 제정 규정은 2017. 1. 1.부터 시행한다.